

## 2016학년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

- 일시 : 2016년 10월 05일(수요일) 14:00 ~ 14:20
- 장소 : 대학본부 8층 회의실
- 회순
  - 1. 개회 2. 국민의례 3. 위원장 인사 4. 위원장 개회 선언 5. 안건상정 6. 폐회
- 상정안건
  -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변경(안)

간 사 : 지금부터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 
(권진철)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  
(국민의례를 마친 후)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.

위원장 :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'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 
(박병덕)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됨을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의사일정에 따라 「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변경(안)」을 상정하겠습니다. (의사봉3타)  
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기획부본부장님 :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「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변경(안)」에  
(최용재) 대하여 설명함.

위원장 :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.  
(박병덕)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 : 국내외연구교수 개선안 중에서 재직 교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반기에 연구  
(권덕창) 년을 시작해도 활동기간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직원은 연구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교원과 교직원을 구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.

기획부본부장님 : 현행기준 연구년 또는 공로연수로 되어 있는데 개선안은 공로연수를 빼고 연구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교원만 해당하고, 학생지도비는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.

위 원 : 학생지도활동 영역 개선안 중에서 인사변동자의 경우 횟수 적용시 횟수도 월할  
(권덕창) 계산이라고 써 있는데 55%만 해도 6개월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실제  
근무개월수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위 원 : 실제 근무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임되었다가 다시 복직한 교수의 경우는 현  
(송영남) 행 지급규정안에 따르면 본인 학생지도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받을 수는 있겠죠.  
그런데 개선안에 따르면 못받죠. 그렇지 않습니까?

기획부본부장님 : 복직이 되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. 실적만 있으면 일반 교직원과  
(최용재) 동일하게 지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 원 : 작년과 올해 거쳐서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지도비를 신청할 경우에 개선  
(송영남) 안에 따르면 징계 기간동안은 못받게 되어있습니다.

위 원 : 징계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징계라고 하더라도  
(김 영) 법원에서 징계 무효로 판결이 ~~다면~~ ~~다면~~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.  
실적이 있으면 줘야 합니다. ~~급여~~ ~~뿐만 아니라~~ 모든 것을 징계 안 받은 것과  
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.

위원장 : 나는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를들어 8월까지 정년하신분은 8월까지 근무  
(박병덕) 해도 전체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.

위 원 : 8월까지면은 8월까지 근무한 것만큼 줘야지 일을 안 한것까지 주면 안 되죠  
(권덕창) 월할로 계산해야 합니다.

위 원 :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교수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면 그 예산은 지  
(송영남) 금 있는겁니까? 어떤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합니까? 본의아니게 실적이 없게되  
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?

위 원 : 판결에서 줘야된다고 판결이 나오면 줘야되는 거죠.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든지  
(김 영)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겠죠.

기획부본부장님 : 지급기준을 보면 연구영역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 중 정책연구는  
(최용재) 작년보다 늘려져 있는데 직원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산학협력단에서  
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곧 시행될 예정인데 아마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  
제 같습니다. 내년 2월말경 쯤 실무심사를 해서 실적으로 인정해주면 될 것  
같습니다.

위 원 : 학생지도비만으로 수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?

(권덕창)

기획부본부장님 : 네 그렇습니다.

(최용재)

위원장 :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?

(박병덕)

위원들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·답변은 종결하  
(박병덕) 겠습니다.

위원장 :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·반 표결에 들어  
(박병덕) 가겠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

위원들 :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박병덕)

위원들 : (전원 거수)

위원장 : 상정된 안건에 대해 13분 /의원 ~~총~~ 두 전원 찬성하였음으로 차별되었음을 선  
(박병덕) 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위원장 :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 
(박병덕)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 
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(間)서명할 수  
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.

간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 제3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송영남, 권덕창, 변재옥 위원께서 수고해주셨  
습니다.

위원들 : 구종남, 권덕창, 변재옥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위원장 :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구종남, 권덕창, 변재옥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 
(박병덕) 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위 원 장 :

박 명 덕 (인)

간 사 :

권 진 철 (인)

기 록 자 :

김 미 경 (인)

1118 9 1~19